

아파트세무주치의 서비스 계약서

(甲) 신청인	상 호(단지명)		(인)	전산프로그램 아이디	
	사업자등록번호			아파트 코드번호	
	대표자 / 관리소장			전화번호	
	사업장주소			팩스번호	
(乙) 세무 대리인	상 호	세화세무회계사무소		사업자등록번호	731-20-00984
	대 표 자	조 용 훈			
	사업장주소	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98, 6층 602호			
(丙) 서비스 업체	상 호	기웅정보통신(주)		사업자등록번호	214-81-59394
	대 표 자	최 병 인		전화번호	1899-5915
	사업장주소	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IT캐슬 2동 613호		팩스번호	02-3463-5977

"甲"과 "乙"과 "丙"은 아래의 계약 조건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일자 : 년 월 일 [신규계약 ☐ 재계약 ☐]

[계약 조항]

제1조[업무]

- 본 서비스는 XPERP 또는 조이노리(이하 전산프로그램)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한다.
-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甲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회계장부 기록의 검토, 부가가치세 신고, 법인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. (1년 계약에 부가세 4회, 법인세 신고 1회 대행)
- 丙은 甲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을 지원하며, 乙이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서비스를 제공한다. 또한, 甲이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丙이 대표 수납하여 정산한다.
- 甲은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,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, 자료의 입력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하여야한다. 甲은 甲의 재무회계프로그램을 수집 및 분석, 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을 乙과 丙에 부여한다.

제2조[수수료]

- 본 계약에 따른 세무신고수수료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수수료는 월정액 50,000원(VAT별도)으로 한다.
연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년 550,000원(VAT별도)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.
단, 300세대 미만인 경우 월정액은 35,000원(VAT별도), 일시납인 경우에는 년 385,000원(VAT별도)에 제공한다.
-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CMS자동출금을 통해 매월 25일에 자동출금 납부한다.
일시납은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하며, 월납인 경우에는 가상계좌번호 혹은 CMS 자동출금을 통해 납부한다.

※ 수수료 납부 방식 선택

납부방법	☐ 일시납	☐ 월납
세대수	☐ 300세대 미만	☐ 300세대 이상

※ 결제 방식 선택(일시납인 경우에는 가상계좌만 가능)

결제방법	☐ 가상계좌	☐ 자동이체
※ 자동이체 선택시 출금동의서 작성필요		

제3조[계약기간 및 자동승계]

-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.
- 계약 만료일자는 필요 당사자가 인지해야 하며 어느 일방도 사전 통보의무는 없다.
- 본 계약 체결시 甲의 당사자나 甲의 관리주체가 계약기간 내에 변경이 있더라도 업무 특성상 본 계약은 자동승계의 성격을 가진다.

제4조[정보제공(수입동의 포함) 및 기밀보장]

甲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되는 세무정보를 乙과 丙이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며, 세무대리를 위하여 홈택스에 세무대리인 지정 및 수입동의 처리에 동의한다. 乙과 丙은 제공받은 세무정보 및 본 계약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甲의 기밀을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목적 외 사용하거나,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[중도해지 및 해약책임]

- 甲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신고 업무에 대하여 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乙과 丙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, 乙과 丙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甲과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정리하기로 한다.
- 甲이 연사용료를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완료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, 丙은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월납기준으로 산정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한다. 단, 법인세 신고완료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비용으로 인하여 환불하지 아니한다. 甲이 월이용료 납부 중 중도해지시, 계약기간 동안의 납입금액이 법인세 신고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甲은 그 차액을 丙에게 배상한다. (법인세 신고비용=30만원/VAT별도)

제6조[업무수행 불능책임]

- 甲이 제공한 자료의 미비,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乙과 丙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甲의 서비스 신청시점이 세무신고를 대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과 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.
- 본 서비스는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를 연동하는 서비스이므로,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약 종료시에는 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다. (단, 서비스 지속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도비용이 부과된다.)
-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甲, 乙, 丙 어느 일방에도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[기타]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본 계약서를 3부 출력하여, 날인 후 1부는 甲이 보관하고, 2부는 丙에게 전달한다.